

국 민 안 전 처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녕군

관 련 자 창녕군 ○○○○과

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는 2014. 10. 1. 부터 2015. 6. 30까지 창녕군 ○○○
○과에서 근무하면서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중기계획
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행정기관
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이에 근거하여 창녕군 ○○○○과에서는 [표]와 같이 대산 급경사지 붕괴
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.

지구명	사업량	도금액 (백만원)	사업 기간	도급업체	비고
○○지구	계단식 옹벽 L=25.7m 격자블럭설치 1,044㎡ 낙석방지책 L=290m	615	2013.6.26.~ 2014.9.29	(주) 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	

1.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
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
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
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창녕군 ○○○○과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○○지구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54,020천원을 사용하였다.

[표 1]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현황

시·군	사업명	집행액 (천원)	집행일	집행내용	비고
계		54,020			
창녕군	○○지구	9,100	2015.2.17.	○○지구 실시설계용역	
		18,000	2015.6.26.	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타당성 용역	
		9,100	2015.6.24.	○○지구 정밀안전진단	
		17,820	2015.12.30	2015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	

조치할 사항 창녕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향후 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